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강석주 의원(찬성자:23명)

나. 의안번호 : 제 3020 호

다. 발의일자 : 2025. 8. 11.

라. 회부일자 : 2025. 8. 14.

2. 제안이유

-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고 급격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절별 재난인 폭염 및 한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한파에 대해서도 폭염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는 계절성 재난인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한파”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반영함(안 제2조제2호 등)

나. 시장의 책무에 한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3조)

다. 종합대책 수립에 한파를 포함하고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5조 및 6조)

라. 재난도우미 운영에 한파 취약계층을 포함하고 관련 지원대책에 한파를 규정함(안 제8조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기상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5. 8. 20.~8. 24.)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 요

- 본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계절별 재난인 폭염과 더불어 한파 역시 동일한 수준의 피해 예방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폭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대책 수립 및 시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한파’에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명부터 개별조문까지 전부개정하려는 것임([표] 참조).

[표] 전부개정 주요 조문내용

현행	전부개정안
<u>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대한 대책 및 시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에 따른 서울특별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u>서울특별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에 따른 서울특별시민의 생명·건강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더위·한파 쉼터”란 폭염·한파를 피해 일시적으로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 -----. 5. “폭염·한파 저감시설”은 폭염·한파 ----- -----.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①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 시와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예측 및 피해 전망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6.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8.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에 게 자문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6. “폭염·한파 취약지역”은 폭염·한파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폭염·한파-----
----- 생명·건강과 재산-----

--.

제4조(시민의 의무) ① ---- 폭염·한파 특보가 발효된 ----- 폭염·한파 행동요령-----.

② ----- 폭염·한파 -----
-----.

제5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
----- 따라 서울특별시 폭염·한파 -----
-----.

② -----
-----.

1. 폭염·한파 -----
2. 폭염·한파 -----
3. 폭염·한파 -----
4. 무더위·한파 쉼터-----
5. 폭염·한파 -----
6. 폭염·한파 저감시설 -----
7. 폭염·한파 취약계층-----
8. ----- 폭염·한파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폭염·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 폭염·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한파 취약지역-----
-----.

1. ----- 폭염·한파 -----

2.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실시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 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보급

3. 무더위쉼터, 살수시설, 차양막 등 폭염 회피·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온열질환 의료비 지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무더위쉼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 쉼터의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2. 폭염 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 시설 설치사업

3.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시장은 시민을 대상

2. (현행과 같음)

3. ----- 폭염·한파 -----

4. (현행과 같음)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 폭염·한파 취약
계층-----

-----.

② ----- 폭염·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한파 취약계층----- 무더위·한
파 쉼터 및 폭염·한파 저감시설 --- 폭염·한파
대응-----.

제9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 폭염·한파
취약계층-----
-----.

1. (현행과 같음)

2. 선풍기, 온풍기 등 냉·난방 용품 보급

3. 무더위·한파 쉼터, 살수시설, 방풍시설 등 폭
염·한파 -----

4.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

5. (현행과 같음)

제10조(무더위·한파 쉼터) ----- 무더위·
한파 쉼터의 냉·난방비 -----.

제11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
-----폭염·한파 저감시설 -----

-----.

1. ----- 폭염·한파 저감시설
--

2. 폭염·한파 대응 ----- 폭염·한파 저
감시설 ----

3. (현행과 같음)

② ----- 폭염·한파 저감시설 -----

-----.

제12조(폭염·한파 안전교육 실시) -----

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폭염·한파 -----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 폭염·한파 ----- ----- -----.

■ 폭염 및 한파 관련 상위법 현황

- ‘18. 9. 18일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기본법”)에서는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자연재난으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책무에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20.4.30.)하였음.
- 따라서 서울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1)에 따라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 대책 및 대비,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계 구축 등 ‘폭염대책’과 ‘한파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 현행 조례에 따라 ‘폭염’에 대해서는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1) 제3조(책무) ① (생략)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8.9. (생략)

③ ~ ⑥ (생략)

시행,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취약계층 지원, 무더위쉼터,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폭염 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폭염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동 개정안은 이미 상위법령에서 ‘폭염’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파’에 대해서도 폭염과 등등한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것으로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음.

■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 제명 및 본문 내용 전반에 걸쳐 “폭염”에만 국한하던 것에서 “폭염·한파”로 용어를 수정해 대상을 확대했는데 전체적으로 정합성 및 호환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 개별적으로는 안 제2조 관련하여 현행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던 폭염을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로 수정하며, ‘한파’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음([표] 참조).

[표] 용어의 정의 수정사항(안 제2조 관련)

현행	전부개정안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 <신설>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 참고로,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주의보’ 기준은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이며,
- ‘한파주의보’ 기준은 10월~4월 사이의 기간 중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임([표] 참조).

[표] 폭염 및 한파 특보의 기준(「기상법 시행령」 별표 1)

종 류	주 의 보	경 보
한 파	10월 ~ 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2.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 ~ 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2. 아침 최저기온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폭 염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다음으로, 안 제9조와 관련하여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사항을
현행 폭염에만 해당되는 “선풍기 등 냉방물품”, “무더위쉼터, 살
수시설, 차양막 등 폭염 회피·저감시설”, “온열질환” 등과 함께
방풍시설 등 한파 관련한 것까지 포함시켜 확대하고([표] 참조),

[표] ‘한파’ 관련 추가사항(안 제9조 관련)

현 행 (“폭염”)	전 부 개 정 안 (“폭염·한파”)
•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 무더위쉼터, 살수시설, 차양막 등 폭염 회피·저감 시설 설치 사업 • 온열질환 의료비 지급	• 선풍기, <u>온풍기</u> 등 냉·<u>난방</u> 물품 보급 • 무더위·<u>한파</u> 쉼터, 살수시설, <u>방풍시설</u> 등 폭염·<u>한파</u> 회피·저감 시설 설치 사업 • 온열질환 및 <u>한랭질환</u> 의료비 지급

- 안 [별표]에서 현행 대비 한파와 관련한 “방풍시설”과 “온열의자”
에 대한 정의를 추가한 것이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표] 한파 저감시설(안 [별표] 관련)

한파 저감시설	정 의
방풍시설	버스 승강장 등에 방풍벽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 찬 바람을 막아주는 한파 저감 구조물을 말한다.
온열의자	버스 승강장 등에 설치하여 겨울철 체온을 유지하거나 한파를 저감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